◇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地籍)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8월 30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관 권 도 엽

◉대통령령 제2311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예정지구의 지정 등)”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예정지구면적”을 “택지개발지구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정지구면적”을 “택지개발지구면적”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을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예정지구의 지정제안)”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3호, 같은 항 제8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예정지구지정”을 “택지개발지구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6조의4를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4)제2항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예정지구 안”을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최소범위 안”을 “최소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정지구안”을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예정지구의”를 “택지개발지구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예정지구안”을 “택지개발지구”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2. 택지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
3.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보급
5.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7. 그 밖에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2항 중 “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개정이유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23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